

일련번호 2019-0000066

# 기부금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부자

성명 (법인명) : 사업수행센터(서울교통공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698-87-00598  
 주소 (소재지) :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용답동)

##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214-82-11572  
 소재지 : 066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45 (서초동)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 용			기 부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제외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지정	40	금전	2019-06-11				100,000			
합계							1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율과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12일  
 신청인 사업수행센터(서울교통공사)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06월

기부금 수령인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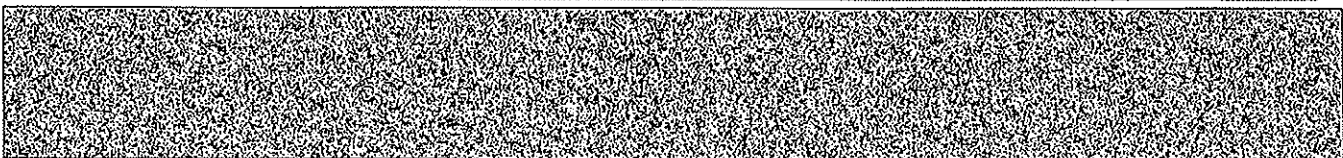


###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일련번호 2019-0000073

# 기부금영수증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서울교통공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98-87-00598
	주소(소재지)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용답동)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10-82-75745
	소재지	034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9-7, 3층 (구산동,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 (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지정	40	금전	2019-06-12			
	합계							417,343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17일  
신청인 서울교통공사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기부금 수령인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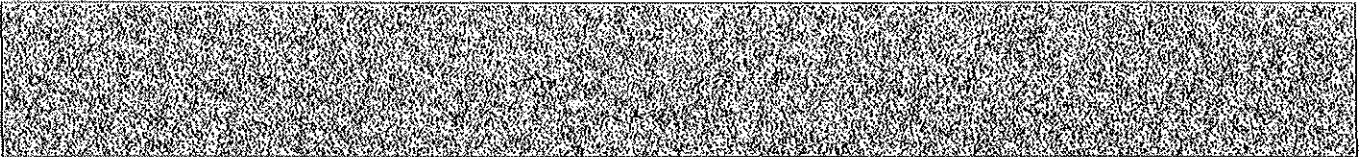


###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시추	42
필요경비(송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일련번호 19-5호

##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성명(법인명) 서울교통공사 주민등록번호 698-87-00598  
(사업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용답동)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시온원 사업자등록번호 108-82-09825  
(고유번호)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9길 48 기부금공제대상  소득세법 제34조 1항  
(우)156-880 (tel)815-8582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24조 1항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지정	40	금전	2019. 6. 12.	-	-	-	300,000
합계							3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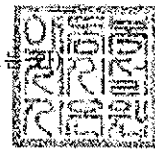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기부금 수령인 시온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순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